

공고 제 1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09월 04일

권선1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매	이 *매 1963- 04- 11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126번길 (권선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 09- 02